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창진 의원

안녕하십니까?

송파 제2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입니다.

오늘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3월 31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 개정안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과거와 달리 서울시 노후 아파트 재건축에 투입되는 인건비 및

자재비의 급격한 인상으로 공사비가 상승하여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한 단지가 대부분입니다.

더욱이 재건축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주는 법적 상한 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대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규모가 50%를 차지하고 있어 재건축 추진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.

재건축 추가 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규모를 현행 조례 50%에서 법에서 정한 범위인 30%로 완화하여 중단된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고 필요한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.

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!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여러분!

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